

##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협력과 (☎454-2083)

### 【훈 령】

군산시 훈령 제464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

### 【입 법 예 고】

군산시 공고 제2025-250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2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

군산시 고시 제2025-210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12

군산시 고시 제2025-214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15

군산시 고시 제2025-21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23

군산시 고시 제2025-221호      군산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고시      24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5-240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9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25

군산시 공고 제2025-241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비응항)사업 공사완료 공고      27

군산시 공고 제2025-244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29

군산시 공고 제2025-2447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33

군산시 공고 제2025-2470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34

군산시 공고 제2025-2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4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64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군산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완료되면 해산한다”를 “완료되면 해산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회”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력”을 “자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u> <u>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건강가정지원</u> <u>센터</u>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 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수탁자선 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u>건강가정사업</u>을 담당 하는 국장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1. <u>건강가정사업</u>을 담당하는 공무원</p> <p>2. <u>건강가정지원사업</u>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u> <u>심사위원회 운영 규정</u></p> <p>제1조(목적) ----- <u>가족센터</u>----- ----- ----- -----.</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u>건강가정 · 다문화가족</u> <u>지원사업</u>-----.</p> <p>③ ----- ----- -----.</p> <p>1. <u>건강가정 · 다문화가족</u> 지원사 업-----</p> <p>2. <u>건강가정 · 다문화가족</u> 지원사 업-----</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p>

심사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고, 수  
탁 심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  
다.

②·③ (생 략)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①·② (생 략)

③ 수탁자 선정시에는 다음 각 회  
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응모자의  
사업수행능력·재정능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  
다.

1. 필수사항: 수탁기관의 재정능  
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가족관  
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  
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력의 적  
정성

2. (생 략)

-----  
-----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  
-----.

1. -----  
-----  
-----  
-- 자격-----

2.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5-250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의 신속한 대응 및 전담기능 수행을 위한 계 단위 신설
- '25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 일부 부서의 기능분담 및 조직 체계 재정비 필요성 확인

2. 주요내용

- 신설 3계 소관부서 업무분장 신설 및 개정, 계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조직변동 : 계 3개 신설

- 가. 기획예산과 기본사회계 신설
- 나. 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 신설
- 다. 농촌지원과 농업인재육성계 신설

2. “계” 명칭 변경 : 아동정책계 → 아동친화정책계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8.(월) / 7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702, FAX : 063)454-6006, 전자우편 : [dofl3037@korea.kr](mailto:dofl303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2. .>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시 본청 소관]

기획예산 과 장	기 획 업무분야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이하 생략>
	정 책 업무분야	○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예 산 업무분야	○ 시 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이하 생략>
	조직성과 업무분야	○ 시 기구, 정원 총괄 <이하 생략>
	기본사회 업무분야 <신설>	○ 군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 국·도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확보 ○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 정책 간 중복·사각지대 분석 및 통합조정 ○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생활 실태 분석 및 기본사회 정책 수요조사 ○ 주민체감형 기본사회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 ○ 기본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 협력 운영 ○ 정책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대응 ○ 기본사회 정책 업무 전반 지원 및 역량 강화 ○ 기본사회 인식확산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업무 추진
	범무의정 업무분야	○ 범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 <이하 생략>
경로장애인 과 장	경로복지 업무분야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이하 생략>
	통합돌봄 업무분야 <신설>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 총괄 ○ 민관협력추진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및 관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 중앙·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 관련 사업 연계 관리 ○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및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니터일 총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li> <li>○ 통합돌봄사업 교육 및 홍보</li> <li>○ 공공의료연계시스템 운영 관리</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업연계 및 협업체계 운영</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li> <li>○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li> <li>○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li> </ul>
	<p>경로시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lt;이하 생략&gt;</li> </ul>
<p>아동정책 과 장</p>	<p>아동친화정책 업무분야 &lt;개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lt;이하 생략&gt;</li> </ul>

[농업기술센터 소관]

<p>농촌지원 과 장</p>	<p>지도운영 업무분야 &lt;개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행정 총괄 기획, 조정, 평가</li> <li>○ 농촌진흥기관 업무 전반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li> <li>○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신규 시책 발굴</li> <li>○ 시, 의회 관련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작성</li> <li>○ 농촌지도 예산관리 및 과 회계, 일상경비 출납</li> <li>○ 보안문서·기록물 관리,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li> <li>○ 농촌지도직 포상, 인사, 교육 인적 관리</li> <li>○ 농촌지도직 전문화 역량강화 교육 지원</li> <li>○ 농업기술 공보 및 농촌진흥기관 대농민 홍보물 관리</li> <li>○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li> <li>○ 여성농업인 육성 및 능력개발 교육 지원</li> <li>○ 영농폐자재 공동수거 사업</li> <li>○ 농업인 정보·기술지 보급</li> <li>○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그린작은도서관 운영관리</li> <li>○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추진</li> <li>○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지역 특화작물 육성</li> <li>- 당면 영농기술 상담 및 현장지도</li> <li>- 농업인학습단체 조직관리 및 선도농 육성</li> <li>- 신규농업인(청년, 귀농인) 발굴 및 영농 정착 현장애로 해결</li> </ul> </li> </ul>
---------------------	-------------------------------------	--

<p>농업인재육성 업무분야 &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종자 공급 및 자율교환 알선창구 운영</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농업인재육성 소관 업무 총괄</li> <li>○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li> <li>○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교육 지원</li> <li>○ 4 - H회(본부, 연합회, 학생) 육성 지원</li> <li>○ 청년 맞춤형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사업</li> <li>- 청년 스타트농 영농기반 지원</li> </ul> </li> <li>○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연구회연합회 및 단위연구회 지원</li> <li>- 품목농업인연구회 워크숍 및 과제활동 지원</li> </ul> </li> <li>○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조성 시범사업</li> <li>○ 농업인대학 운영 및 동창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대학 학사과정 운영</li> <li>- 농업인대학 총동창회 운영지원</li> </ul> </li> <li>○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li> <li>○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현장교육 등</li> <li>○ 중장기 전문연수교육 및 현장교육 컨설팅</li> <li>○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안 및 정보갱신</li> </ul> </li> <li>○ 라이브커머스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콘텐츠 제작 및 실전라이브 활용 지원</li> </ul> </li> <li>○ 농업인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li> <li>- 농가 생산물 온라인 마케팅 교육</li> </ul> </li> <li>○ 선도농업경영체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사업</li> <li>○ 농산물소득조사</li> </ul>
---------------------------------------	--

군산시 고시 제2025-20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군경 합동묘지	장사시설 (공동묘지)	나운동 1299-4번지 일원	23,151	증) 206	23,357	군산고202 (*21.12.31.)	

##### 나.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군경합동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동에 따른 위치(지번)변경 (나운동 산 175번지 일원 → 나운동 1299-4번지 일원)</li> <li>면적 : 23,151m<sup>2</sup> → 23,357m<sup>2</sup> 증) 20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내 지적분할 및 등록전환에 의한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li> </ul>

####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5-210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4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5. 1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강로 808-29 (내홍동)	-	202511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710	금강을 가르치는 도로	24시향토 납시터
2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33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5 길 36	20251125		200807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3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7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240 (오식도동)	20251127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 식으로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338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팔길 23 (산 북동)	2025112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 명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장동 488-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포천로 155 (경장동)	20251127		20100125	주변에 경포천 이 흐름	
6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72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678 (소룡동)	20251127		20230111	군산시산업단지 를 지나는 도로	
7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리 산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 3길 45-64	20251127		20090508	섬이름에 서수 번호 사용	
8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678 (소 룡동)	-	20251117	건축물대장 말소	20230111	군산시산업단지 를 지나는 도로	대우볼트
9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33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도로 319 (지곡동)	2025112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 명 부여	

10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569-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156-2 (소룡동)	202511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창암길 109	20251120		20070528	도암리 창암 마을 소재	
12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02-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사2길 9 (내흥동)	20251118		20211215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3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2길 85	20251118		20100125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수번호사용	
14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06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신상용전길 37-17	20251118		20100125	서수리 신상용전 마을 소재	
15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146-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봉황길 118-9	20251118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16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54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원당2길 1	20251118		20070528	고유지명에서 유래	

군산시 고시 제2025-214호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에 보고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군 산 시 장

1. 고 시 명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 립 일 : 2021. 4. 28.(창립총회 개최)

다. 설립목적 : 지방정부 간 기본사회 정책 공유 및 발전제도 개선  
으로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라. 참가현황 : 기초지방자치단체 30개 [별표]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고시방법 : 군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 군산시 기획예산과 기본사회팀(☎ 063-454-2707)

붙 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붙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2021. 01. 26.

(개정) 2025.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는 명칭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본사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사회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와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5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6조(임원)**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해 부회장, 감사, 대변인을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장 회 의

**제9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 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시 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에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5조(시·도별협의회)** ①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② 시·도별 협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고,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의 결정을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기본사회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2. 기본사회 교육 ·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5.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5. 1. 1.>

이 규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별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구 분	지방정부명	비 고
	<p>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p>	<p>30개</p>

고시 제2025-218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군 산 시 장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3길 14, 105동 104호		
성명(법인명)	김 종 욱		
하천명칭	금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일원		
점용면적	257m <sup>2</sup>		
최초허가일	2025년 11월 19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25년 11월 19일 ~ 2030년 11월 18일(5년)		

군산시 고시 제2025-221호

## 군산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 기준일: 2026. 1. 1.
- 적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 길급: 7,000원
  - 로급: 14,000원
- 납부방법: 군산시 수입증지 및 전자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5-2405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9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109호(2021.7.9.) 및 제2021-200호(2021.12.24.)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9호)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외 3필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청암산 주차장(119호)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내용	비 고
	면 적	최초결정일	면 적	
주차장(119호)	8,011㎡	군산고10 (‘18.1.12.)	8,01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2.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지방자치단체 시행)
-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옥산리	681	답	4,262	4,26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682	전	635	6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683	답	2,371	2,37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683-1	잡	743	7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4필지			8,011	8,011						

군산시 공고 제2025-241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비응항)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5-51호(2025.3.28.)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비응도동 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비응항)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9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비응항)사업
  - 나. 명 칭 : 군산해양경찰서 비응파출소 청사 증축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1,999.2㎡
  -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	건축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1,999.2	주4개동/ 지상2층	856.51 * 건폐율 42.84%	1,248.8 * 용적률 62.47%	금회 제1종근생 (파출소) 증축

- (금회) 주4동/2층 제1종근생(파출소) 건축면적 131.22㎡ 연면적 250.29㎡ 증축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장
  - 나. 주 소 : 군산시 군산창길 21(금동, 군산해양경찰서)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3. 28. ~ 2025. 12. 31. (준공 2025. 11. 4.)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비응도동	97	대	1,999.2	1,999.2	국 (해양수산부)					
계		1필지		1,999.2	1,999.2						

군산시 공고 제2025-2442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1.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청~운동장간(대로2-6호선) 도로개설공사(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군 산 시 장

##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청~운동장간(대로2-6호선) 도로개설공사(1단계)	- L=350m, B=30m	군산시 사정동 518-7번 지 일원

2. 사업기간 : 2020. 6. 26. ~ 2027. 6. 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4. 토지조서 내용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과에 토지조서 등 비치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가액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

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7.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25. 11. 20. ~ 2025. 12. 5. [15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52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대로2-6)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사정동	466-6	전	447	44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사정동	466-4	전	747	74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정동	466-5	전	17	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사정동	467-3	전	15	1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정동	464	전	88	8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사정동	469	전	98	9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사정동	467-2	전	394	3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사정동	468-1	전	172	17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사정동	468-2	전	351	35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사정동	470	전	251	25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사정동	471-7	임	1,049	1,0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사정동	471	전	324	32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사정동	472	전	22	22	김*우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651				
14	사정동	471-8	임	124	12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사정동	471-1	임	873	8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6	사정동	산39-1	임	32	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7	사정동	522-5	임	19	1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8	사정동	523-1	임	396	39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9	사정동	522-1	전	37	3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0	사정동	525-1	대	400	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1	사정동	522	전	154	15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2	사정동	526-4	대	264	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3	사정동	526-5	도	44	4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4	사정동	527-7	도	48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5	사정동	527-3	도	139	139	고*주	군산시 사정동 502				
26	사정동	527-4	구	10	1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7	사정동	527-6	답	994	9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8	사정동	521-4	도	53	53	고*온	군산시 사정동 525				
29	사정동	521-5	답	167	16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0	사정동	528-3	답	34	3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1	사정동	527-1	구	53	53	고*건					
32	사정동	521-3	구	3	3	고*온	군산시 사정동 525				
33	사정동	529-1	전	22	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4	사정동	520-5	전	731	7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5	사정동	520-2	도	13	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6	사정동	521-1	도	45	4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7	사정동	521-2	답	2	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8	사정동	520-6	도	35	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9	사정동	562-14	도	687	76	국(농수산부)					
40	사정동	518-6	대	45	4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1	사정동	517	전	314	3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2	사정동	516-7	도	2	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3	사정동	516	전	36	3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4	사정동	518-7	임	862	86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5	사정동	518-1	대	132	1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6	사정동	산8-4	임	41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46필지			10,786	10,175						



군산시 공고 제 2025 - 2447호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가 시행하는 내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5수용0053)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내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3. 공고 기간 : 2025. 11. 21. ~ 2025. 12. 08. (17일간)
-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512)
-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송달주소	사유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표시	비고
1	김*균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55, **동 ***호	폐문부재	군산시옥서면 옥봉리 115-163	김*남 자녀
2	김*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	수취인불명	''	''

- 6.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5. 12. 29)
- 7.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5 - 2470호

##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옥산 리도 206호(대려~금성)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업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 모	사업기간
옥산리도 206호(대려~금성) 도로확포장공사	옥산면 옥산리 174-23 ~ 회현면 대정리 794	농어촌도로 확포장 L=2.0km, B=6.5m,	2025 - 2029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11. 25. ~ 2025. 12. 1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4)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26년 1월 경 보상협의 예정(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8. 시·도시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9. 기 타 사 항

-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지번	당초 면적	분할 (면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옥산	옥산	273-6	248	247	도	문*석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2	옥산	옥산	273-8	117	77	도	이*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286-5	이*열	금광동 172	근저당	
									이*환	소룡동 1323-13	근저당	
									조*진	수송동	근저당	
									김*옥	이리시 인화동 1가	근저당	
3	옥산	옥산	275-1	175	5	대	미등기		고*진	박면 내사2리		
4	옥산	옥산	275-2	40	32	도	미등기		고*진	박면 내사2리		
5	옥산	옥산	276	106	8	대	고*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갈현동				
6	옥산	옥산	277-1	2,401	19	묘	윤*현	군산시 미장남로10	동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임피면 서 원석곡로 597	근저당	
7	옥산	옥산	277-2	93	16	대	미등기		고*진	박면 내사2리		
8	옥산	옥산	285	1,051	14	묘	미등기		최치봉	내유동		
9	옥산	옥산	286-1	26	25	대	경주최씨관과정과 내류종중	군산시 옥산면 내류길				
10	옥산	옥산	286-2	195	63	대	강*수	군산시 옥산면 대려1길				
11	옥산	옥산	286-3	159	88	전	경주최씨관과정과 내류종중	군산시 옥산면 내류길				
12	옥산	옥산	287-1	450	30	대	강*수	군산시 옥산면 대려1길				
13	옥산	옥산	287-2	7	6	도	군산시					

14	옥산	옥산	291-2	198	130	도	정*현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12				
15	옥산	옥산	292-2	106	14	도	신*식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6	옥산	옥산	306-2	93	64	도	군산시					
17	옥산	옥산	307-2	132	68	도	김*균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8	옥산	옥산	310-2	60	25	도	신*식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9	옥산	옥산	316-2	17	8	대	문*순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0	옥산	옥산	317-3	30	11	도	오*은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1	옥산	옥산	317-4	185	114	도	옥구군 옥산면 옥산리 대려마을새마을 협의회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2	옥산	옥산	318-2	89	11	도	미등기		김*운			
23	옥산	옥산	319-1	1,230	142	답	문*환	군산시 금암동				
24	옥산	옥산	319-2	142	5	도	문*환	군산시 금암동				
25	옥산	옥산	320-1	109	86	답	문*철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6	옥산	옥산	321-6	11,012	929	답	김*숙	군산시 금암동				
27	옥산	옥산	321-7	2,767	120	답	문*환	군산시 금암동				
28	옥산	옥산	321-1 3	20	6	도	문*무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29	옥산	옥산	321-1 4	66	60	도	문*무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30	옥산	옥산	321-2 2	236	2	답	윤*식	군산시 대명길 13,				
31	옥산	옥산	321-2 4	458	3	대	박*임	군산시 옥산면 대려1길				
32	옥산	옥산	333-6	1,320	246	답	강*숙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37				
33	옥산	옥산	333-1	2,400	373	답	박*옥	군산시 내사길43,				1/2



53	옥산	옥산	346-1	433	409	유	국(농수산부)						
54	옥산	옥산	346-2	205	139	전	평문층승	군산부 천대전정 1정목					
55	옥산	옥산	346-3	425	79	유	국(농수산부)						
56	옥산	옥산	346-4	655	356	전	백*실	군산시옥산면 옥산리	옥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지상권		
57	옥산	옥산	347	1,597	344	전	김*숙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8					
58	옥산	옥산	348	872	61	대	윤*식	익산시 익산대로 33길					
59	옥산	옥산	348-1	873	40	대	김*우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산북동 2952	근저당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 조촌로 123	근저당		
60	옥산	옥산	349	975	507	전	김*식	김제군 백구면 석교리					1/14
							김*익	김제군 백구면 석교리					1/14
							김*손	김제군 백구면 석교리					1/14
							김*철	김제군 백구면 석교리					1/14
							김*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14
							김*성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1/14
							김*환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1/14
							김*형	옥구군 옥산면 옥산리					1/14
							김*섭	정읍군 이평면 등지리					1/14
							김*철	정읍군 입암면 신명리					1/14
							김*련	고창군 공음면 진동리					1/14
							김*신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1/14
							김*천	군산시 금광동					1/14
							김*행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14
61	옥산	옥산	349-3	694	17	전	김*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62	옥산	옥산	350-1	3,898	119	유	국(농수산부)					
63	옥산	옥산	350-4	600	378	대	백*실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4	옥산	옥산	350-5	126	3	답	문*태	군산부 전대전정 1정목				
65	옥산	옥산	350-6	660	20	대	홍*기	군산시 양안로 120,				
66	옥산	옥산	350-7	3,081	664	답	문*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20				1/3
							김*선	군산시 서수면 가자길				1/3
							문*규	군산시 구영5길 42	주식회사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 제대로	가압류	1/3
									남평문씨세동과 (달자언자후손)중 회	군산시 창성1길 10	가처분	
67	옥산	옥산	350-8	1,073	188	답	백*실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	옥산	옥산	350-9	702	18	답	홍*기	군산시 양안로 120,				1/2
							윤*자	군산시 양안로 120,				1/2
69	옥산	옥산	368	1,286	280	답	문*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20,				1/3
							김*선	군산시 서수면 가자길				1/3
							문*규	군산시 구영5길 42	주식회사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 제대로	가압류	1/3
									남평문씨세동과 (달자언자후손)중 회	군산시 창성1길 10	가처분	
70	옥산	옥산	369	598	104	전	김*현	군산시 백토로 216,				
71	옥산	옥산	370-1	764	435	답	강*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36-18				
72	옥산	옥산	370-2	374	2	전	강*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36-18				
73	옥산	옥산	650	2,810	458	구	국(농수산부)					
74	옥산	옥산	산	2,577	17	임	광산김씨경력공과 월연리중중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8-3										
75	옥산	옥산	산 61-1	10,612	36	임	국(산림청)						
76	옥산	금성	50-1	142	42	대	채*자	군산시 문화동 26					
77	옥산	금성	50-2	93	18	도	신*식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8	옥산	금성	51-1	218	86	전	채*자	군산시 백토로 93,	서*정	대전 서구 도마4길	소유권일부 가처분		
79	옥산	금성	141-1	5,940	59	유	국(기획재정부)						
80	옥산	금성	326-1	2,430	13	답	이*로	군산시 회현면 용화2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		
									회현농업협동조합	군산시 회현면 광 지산길 4	근저당		
81	옥산	금성	327	8,809	2,039	구	국(농수산부)		국*운				
82	옥산	금성	336	1,295	357	구	국(농수산부)		국*운				
83	옥산	대정	794	591	54	구	국(농수산부)		국*운				
84	옥산	대정	794-20	17,156	10	구	국(농림축산식품 부)		국*운				
85	옥산	대정	576	289	157	전	유*길	군산시 나운동 92 금호타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 광산구 하남 산단8번로 177(도 천동)	가압류		
86	옥산	대정	578	163	95	전	강*식	군산시 회현면 회현초교2길	강*운				

군산시 공고 제 2025-253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군 산 시 장

- 1. 공고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칠보빌라 \*동 \*\*\*호 문정\* 외 2건
- 3. 공고기간 : 2025. 12. 1. ~ 12. 14. (14일간)
- 4.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063-454-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 공시송달조서

순 번	동· 리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송달사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1	옥구. 어은	산 95-1	전	6,962	산 95-1	임야	6,9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칠보빌라 *동 ***호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현대아파트***동****호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옥구읍어은리***	문정* 문중* 문태*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
					산 95-8	임야	50			